

제 16 장 정부조달

제 16.1 조 적용범위

장의 적용

1. 이 장은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당사국의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조달**이란 상품, 서비스 또는 그 조합의 조달로 다음의 조달을 말한다.
 - 가.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조달하지 않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공급에 사용되기 위해 조달하지 않은 것
 - 나. 구매, 리스, 임차 또는 할부 구매를 포함한 매입 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아니하는 모든 계약 수단에 의한 것
 - 다.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추정된 조달금액이 부속서 16가에 명시된 관련 기준가와 같거나 초과하는 가액의 것
 - 라. 조달기관에 의한 것, 그리고
 - 마. 제4항 또는 부속서 16가에 따른 적용범위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것
3. 이 장의 목적상,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이하 “BOT 계약”이라 한다)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은 부속서 16나의 적용을 받는다.
4.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비계약적 합의 또는 협력협정, 무상교부, 용자, 보조금, 지분참여, 보증 및 재정적 유인을 포함하여, 조달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이 제

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

나. 재무 대리 또는 예약서비스, 규제되는 금융기관의 청산 및 관리 서비스, 또는 용자, 정부채권, 어음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을 포함한 공적부채의 판매, 상환 및 배분과 관련된 서비스의 조달 또는 취득.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장은 다음 활동과 관련된 은행, 금융 또는 특화 서비스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공적부채 발생, 또는
- 2) 공적부채 관리

다. 국제 무상교부, 용자 또는 그 밖의 지원이 이 장에 불합치하는 조건에 따라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한 지원을 통해 조성된 자금에 의한 구매, 그리고

라. 정부 고용인의 채용 및 관련된 고용 조치

가액산정

5. 적용대상조달인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조달가액을 추정할 때, 조달기관은

가. 이 장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조달을 분할하거나 특정한 조달 가액 추정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나. 그 조달에서 규정될 수 있는 할증료, 수수료, 커미션, 이자 및 그 밖의 수입 흐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가를 고려하며, 선택 조항의 가능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택 구매를 포함한 조달의 총 최대가액을 고려한다.

6. 개별적인 조달 요건이 한 건 이상의 계약 낙찰 또는 계약 분할 낙찰을 초래할 경우(이하 “반복조달”이라 한다), 총 추정 최대가액의 계산은 다음을 기초로 한다.

가. 가능한 경우 이후 12개월 동안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 또는 금액상의 예상되는 변동을 감안하여 조정된, 이전 12개월 또는 조달기관의 이전 회계연도 동안 낙찰된 동일한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조달 가액, 또는
나. 최초 낙찰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 또는 조달기관의 회계연도 동
안 낙찰될 동일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조달 추정가액

7.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친 조달의 총 추정 최대가액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 조달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된다.

8.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새로운 조달 정책, 절차 또는 계약
수단을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이 장에 합치해야 한
다.

제 16.2 조 이 장의 예외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
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에 필수 불가결한 조달과 관련된 자국의 필수적
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의 실시 또한 정보
의 비공개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그러한 조치가 당사국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
거나 당사국간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
는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
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중도덕, 질서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다.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라. 장애인, 자선단체, 또는 교도소 노동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
되는 조치

3. 양 당사국은 제2항나호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 16.3 조 일반원칙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1. 이 장의 적용을 받는 모든 조치에 대해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및 서비스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2. 이 장의 적용을 받는 모든 조치에 대해 당사국은,
- 가. 외국인과의 제휴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를 근거로, 국내에 설립된 어느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나.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을 위해 공급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을 근거로 그 공급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전자적 수단 사용

3. 조달기관은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하는 때에,
- 가. 정보의 인증 및 암호화와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그 밖의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조달이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 나. 접수 시간의 설정 및 부적절한 접근의 방지를 포함하여,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체제를 유지한다.

조달의 수행

4. 조달기관은 다음과 같은 투명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한다.

- 가. 이 장과 합치되는 방식
- 나. 이해 상충을 피하는 방식, 그리고
- 다. 부패 관행을 방지하는 방식

원산지 규정

5. 적용대상조달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공급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적용대상조달에 대해 통상적인 무역거래 과정에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동일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

대응구매

6. 조달기관은 모든 조달 단계에 있어서 대응구매를 모색, 고려, 부과 또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조달에 특정되지 않는 조치

- 7. 제1항과 제2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관세 및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
 - 나. 그러한 관세 및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법
 - 다. 그 밖의 수입규정 또는 절차, 그리고

라. 적용대상조달을 규율하는 조치 외의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제 16.4 조 조달 정보의 공표

각 당사국은,

- 가.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일반적인 적용에 관한 모든 조치 및 그 수정사항을 부속서 16가 제8절에 기재된 전자적 매체로,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즉시 공표한다. 그리고
- 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제 16.5 조 공고의 공표

예정된 조달의 공고

1. 각 적용대상조달에 대해, 조달기관은 제16.9조에 기술된 상황을 제외하고, 공급자들에게 입찰서 또는 적절한 경우 해당 조달에 대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공고를 공표한다. 그 공고는 부속서 16가 제8절에 기재된 전자적 매체로 공표하고, 그러한 각 공고는 해당 조달 입찰을 위해 설정된 전체 기간 동안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2. 예정된 조달의 각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예정된 조달에 대한 기술
- 나. 조달 방법

- 다. 조달에 참가하기 위해 공급자가 충족시켜야 하는 모든 조건
- 라. 공고를 발행하는 조달기관의 명칭
- 마. 공급자가 조달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획득할 수 있는 주소 및 접촉 부서
- 바.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그 조달에의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 주소와 마감일자
- 사. 입찰서의 제출 주소 및 제출 마감일자
- 아.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반복조달에 대해 가능하다면 예정된 조달의 차기 공고 예상 시기
- 자.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일 또는 계약기간, 그리고
- 차. 해당 조달이 이 장의 적용을 받는다는 표시

3. 조달기관은 양 당사국의 관심있는 공급자들에게 가능한 가장 광범위하고 비차별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수단을 통해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공고를 공표한다. 이러한 수단은 부속서 16가에 명시한 단일 창구를 통해 무료로 접근 가능해야한다.

계획된 조달의 공고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향후 조달 계획에 대한 공고를 매 회계연도마다 가능한 한 조기에 부속서 16가 제8절에 기재된 전자적 매체로 공표하도록 권장한다. 그러한 공고는 조달의 대상과 예정된 조달의 공고에 대한 공표 계획일자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요약공고

5. 이 장의 목적상, 조달기관을 포함한 각 당사국은 예정된 조달의 각 건에 대해 공고의 공표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공고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 가. 조달의 대상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자, 그리고

다. 조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주소 및 접촉 부서

제 16.6 조

참가조건

1. 당사국이 공급자에게 조달에의 참가를 위한 등록, 자격 또는 그 밖의 참가요건 또는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공급자에게 참가 신청을 요청하는 공고를 공표한다. 조달기관은 관심있는 공급자가 신청서를 준비하고 제출하고, 조달기관이 그러한 신청서를 기초로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공고를 공표한다.

2. 조달기관은, 참가조건을 설정할 때,

가.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 영역 밖에서의 그 공급자의 영업활동과 더불어,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공급자의 영업활동이 있는 경우, 그러한 활동을 기초로 공급자가 조달의 요건 및 기술 규격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 재정적, 상업적 그리고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참가조건을 한정한다. 그리고

나. 자신의 결정을 조달기관이 사전에 공고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서 명시한 조건에만 기초한다.

3.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할 때,

가.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거나 계약에 낙찰되기 위해서는 그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해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받은 바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조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는 이전의 관련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국내 공급자 및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를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조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4. 지지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조달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공급자를 배제할 수 있다.

가. 파산

나. 허위 신고

다. 종전의 하나 또는 복수의 계약의 실질적인 요건 또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흠결

라. 중대한 범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최종 판결

마. 공급자의 상업상 정직성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업상 부정 행위 또는 작위나 부작위, 또는

바. 세금 미납

5. 조달기관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들이 조달에 참여하는 데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 등록제도 또는 자격심사 절차를 채택하거나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6. 공급자 등록 및 자격심사 과정과 이에 요구되는 기간이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를 특정 조달에 고려되는 것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7. 조달기관은 자격심사를 신청한 모든 공급자에게 해당 공급자가 자격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결정을 즉시 통지한다. 조달기관이 자격심사 신청을 거부하거나 공급자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조달기관은 공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자에게 즉시 서면 설명을 제공한다.

제 16.7 조 예정된 조달에 관한 정보

입찰에 관한 서류

1. 조달기관은 조달에 참여하는데 관심있는 공급자에게 공급자가 적합한 입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즉시 제공한다.

2. 예정된 조달의 공고에 이미 규정되지 않는 한, 그러한 서류는 다음 사항에 대한 모든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

가.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수량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수량을 포함한 조달 내용 그리고 기술규격, 적합성평가 인증, 계획서, 설계도 또는 사용설명서 자료 등을 포함한 충족시켜야 하는 모든 요건

나. 참가조건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 및 서류 목록을 포함한 공급자의 참가조건

다. 계약 낙찰에서 고려될 모든 평가 기준, 그리고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를 제외 시 그러한 기준의 상대적인 중요성

라. 조달기관이 전자적 수단으로 조달을 수행할 경우, 모든 인증 및 암호화 요건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 제출과 관련된 그 밖의 요건

마. 조달기관이 전자 경매를 실시할 경우, 평가 기준과 관련된 입찰 요소의 확인을 포함한 경매 수행의 근거가 되는 규칙

바. 공개 개찰이 있을 경우, 개찰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입회 권한이 있는 인물

사. 지불조건 및 예컨대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과 같이 입찰서 제출 수단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조건, 그리고

아. 상품 인도 또는 서비스 공급 날짜 또는 계약 기간

3. 조달기관은 부속서 16가 제8절에 기재된 전자적 매체로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기술규격

4. 조달기관은 양국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거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다.

5. 조달기관은, 조달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술규격을 규정할 때, 적절한 경우,

가.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 및 기능적 요건을 기준으로 기술규격을 명시한다. 그리고

나.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술규격을 국제표준에 기초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기술규정, 인정된 국가표준 또는 건축법규에 기초한다.

6. 조달기관은 조달요건을 충분히 정확하게 또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러한 경우에 “또는 이와 동등한 것”과 같은 문안이 입찰에 관한 서류에도 포함되지 않는 한, 특정 상표 또는 상호, 특허, 저작권, 디자인, 형태, 특정 원산지,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요구하거나 언급하는 기술규격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7. 조달기관은 특정조달에 대해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인으로부터 해당 조달에 대한 기술규격의 준비 또는 채택에 사용될 수 있는 조언을 경쟁을 배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구하거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항은 조달기관이 천연자원의 보전을 증진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는 것을 배

제하는 것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다.

수정

9. 조달기관이 적용대상조달 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공급자에게 제공한 공고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서 규정한 기준 또는 기술요건을 수정하거나 공고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개정 또는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조달기관은 모든 그러한 수정사항 또는 개정되거나 재발행된 공고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서면으로 전달한다.

가. 알려진 경우, 수정, 개정 또는 재발행 시 참가하고 있는 모든 공급자에게 전달하고, 그 밖의 모든 경우, 원 정보가 이용가능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공급자들이 입찰서를 수정하고, 적절한 경우 수정된 입찰서를 재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달한다.

제 16.8 조

기간

1. 조달기관은 조달의 성격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공급자가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합한 입찰서를 준비 및 제출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2. 선택입찰을 사용하는 조달기관은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 마감일이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의 공표일부터 25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조달기관에 의해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로 이러한 기간이 실행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10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게 단축될 수 있다.

3.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기관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자를 다음의 날부터 40일 미만인 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 가. 공개입찰의 경우, 예정된 조달의 공고가 공표된 날, 또는
- 나. 선택입찰의 경우,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될 것이라고 통지한 날

4. 조달기관은 다음의 상황 중 각각의 경우, 제3항에 따라 규정된 입찰기간을 5일씩 단축할 수 있다.

- 가. 예정된 조달의 공고가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되는 경우
- 나. 모든 입찰에 관한 서류가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의 공표일부부터 전자적 수단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 다. 조달기관이 입찰서를 전자적 수단으로 접수하는 경우

5. 조달기간은 다음의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입찰기간을 10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게 단축할 수 있다.

- 가. 조달기관이 부속서 16가 제8절에 기재된 전자적 수단으로 제16.5 조제3항 및 제4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 공고를 최소 40일, 그러나 12개월을 넘지 않을 만큼 미리 공표한 경우
- 나. 반복적인 성격의 조달에 대한 공지를 후속 공표하는 경우
- 다. 조달기관이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또는
- 라. 조달기관에 의해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로 그러한 기간이 실행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제 16.9 조

입찰절차

1. 조달기관은 공개, 선택 또는 제한입찰 방식을 사용하여 이 장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낙찰한다.

공개입찰

2. 조달기관은 제16.9조제3항부터 제16.9조제5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낙찰한다.

선택입찰

3. 당사국의 법이 선택입찰을 허용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각각의 예정된 조달에 대해,

가. 관심있는 공급자에게 신청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시간을 제공하고, 조달기관이 그러한 신청서를 기초로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조달 참가를 신청하려는 공급자를 요청하는 공고를 공표한다. 그리고

나. 예정된 조달의 공고에 또는 공개된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에, 조달기관이 입찰에 허용될 공급자 수의 제한 및 그러한 제한 기준을 기술하지 않는 한, 참가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조달기관이 결정한 국내 공급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 모두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한다.

제한입찰

4. 조달기관이 공급자간 경쟁을 피하려는 목적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를 차별하거나 자국의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조항을 이용하지 않는 한, 다음의 상황에서만 제한입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요건이 상당 부분 수정되지 않는 한, 다음의 경우

- 1)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거나 입찰참가를 요청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 2) 입찰에 관한 서류상 필수적 요건에 부합하는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은 경우
- 3) 입찰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또는

- 4) 제출된 입찰서가 담합에 의한 것일 경우
- 나.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고 다음 이유 중의 하나로 합리적인 대안 또는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 1) 요건이 예술품에 대한 것인 경우
 - 2) 특허, 저작권 또는 그 밖의 배타적인 권리 보호, 또는
 - 3) 기술적인 이유로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경우
- 다. 최초 조달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원 공급자가 추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 그러한 추가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공급자 변경이,
 - 1) 경제적 이유 또는 기존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최초 조달로 조달된 설비와의 상호호환성 또는 상호운용성 요건과 같은 기술적 이유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 2) 조달기관에 중대한 불편 또는 상당한 비용 중복을 초래하는 경우
- 라. 엄밀히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조달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극도로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공개입찰 또는 선택입찰을 사용해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시에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방법의 사용이 조달기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 마. 원자재 시장에서 구매되는 상품의 경우
- 바. 조달기관이 조사, 실험, 연구 또는 독자 개발을 위한 특정 계약을 목적으로 그 계약과정에서 조달기관의 요구로 개발된 시제품 또는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 사. 청산, 법정관리, 또는 파산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례적인 처분의 경우에 매우 단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만, 정상적인 공급자로부터 일상적인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 아.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디자인 경연대회 당선자에게 낙찰되는 계약의 경우

- 1) 경연대회가 특히,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의 공표와 관련해서 이 장의 원칙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조직되었을 경우, 그리고
- 2) 당선자에게 디자인 계약이 낙찰될 목적으로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독립적인 심사인단에 의해 판정을 받은 경우

5. 조달기관은 제4항에 따라 낙찰된 각각의 계약에 대해 서면 보고서를 준비한다. 그러한 보고서는 조달기관의 명칭,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과 종류 및 제한입찰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제4항에 기술된 상황 및 조건을 표시하는 문안을 포함한다.

6. 조달기관이 입찰절차에서 복수의 언어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언어 중의 하나는 영어이어야 한다.

제 16.10 조 **전자 경매**

조달기관이 전자 경매를 이용하여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하려는 경우, 전자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각 참가자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에 규정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경매 과정에서 자동 순위 또는 순위 재조정에 사용될 수학적 공식을 포함한 자동 평가 방법
- 나. 가장 유리한 입찰서를 기준으로 계약이 낙찰될 경우, 그 입찰서의 요소에 대한 모든 최초 평가 결과, 그리고
- 다. 경매 수행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정보

제 16.11 조 **입찰서 개찰 및 낙찰**

입찰서 처리

1. 조달기관은 조달 과정의 공정성 및 공평성 그리고 입찰서의 비밀유지를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모든 입찰서를 접수하고 개찰한다.

2. 조달기관이 개찰과 낙찰 사이에 공급자에게 문서 양식상 비의도적인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주는 경우, 조달기관은 참가하는 모든 공급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낙찰

3. 조달기관은 입찰서가 낙찰 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가. 입찰서가 모든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에 의해 서면으로 제출될 것. 그리고

나. 입찰서가 개찰 시 공고 및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필수 요건에 합치할 것.

4. 조달기관이 낙찰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조달기관은 참가조건을 만족하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공고 및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요건 및 평가기준만을 근거로 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결정하는 입찰서를 제출했거나,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공급자에게 계약을 낙찰한다.

5. 조달기관이 그 밖의 제출된 입찰서의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달기관은 해당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및 계약 조건을 충족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공급자와 검증할 수 있다.

6. 조달기관은 이 장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조달을 취소하거나 낙찰된 계

약을 해지 또는 수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 16.12 조 조달 정보의 투명성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1. 조달기관은 입찰서를 제출한 공급자에게 낙찰 결정을 즉시 통지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6.13조에 따라 조달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되지 않은 공급자에게 그 조달기관이 해당 공급자의 입찰서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 및 낙찰자의 입찰서의 상대적 이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낙찰정보의 공표

2. 조달기관은 낙찰 후 최대 72일 이내에 서면 또는 부속서 16가 제8절에 기재된 전자적 수단으로 계약에 대해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는 공고를 공표한다.

가.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

나. 조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술

다. 낙찰일

라. 낙찰자의 이름 및 주소

마. 계약액, 그리고

바. 조달기관이 공개 또는 선택입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된 입찰절차를 정당화하는 제16.9조제4항에 따른 상황에 대한 기술

기록 보존

3. 조달기관은 제16.9조제5항에 규정된 보고서를 포함하여,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보고서 및 입찰절차 기록을 보존하며, 낙찰 후 최소 3년 동안 그러한 보고서 및 기록을 보유한다.

제 16.13 조 정보 공개

당사국에게 정보 제공

1.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조달이 공정하고 공평하며 이 장에 일치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즉시 제공한다. 그 정보는 낙찰자의 특성과 상대적인 이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정보 비공개

2. 조달기관, 당국 및 심의기구를 포함한 어느 당사국도 정보를 제공하는 인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인이 자국 국내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달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은 공급자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특정 공급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경우에는 조달기관, 당국 및 심의기구를 포함한 당사국에게 이 장에 따라 비밀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정보의 공개가 법 집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 나. 정보의 공개가 공급자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 다. 정보의 공개가 지적재산의 보호를 포함하여 특정인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또는
- 라. 정보의 공개가 달리 공익에 반할 수 있는 경우

제 16.14 조

공급자 이의제기에 대한 국내 심의 절차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공급자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관심을 가져온 적용대상조달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 장의 위반 혐의와 관련한 모든 이의제기에 대해 공평하고 시의적절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모든 이의제기의 해결을 촉진할 목적으로 공급자들이 협의를 통해 자국의 조달기관으로부터 해명을 구하도록 장려한다.

2. 각 당사국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이고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심의 절차를 제공하며, 동 절차를 통해 공급자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관심을 가져온 적용대상조달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 장의 위반 혐의에 대해 공급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과 독립적으로 적용대상조달에 있어서 발생하는 공급자에 의한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심의하며, 적절한 판정 및 권고를 내리는 최소 하나의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을 설립 또는 지정한다.

4. 각 공급자는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충분한 기간의 시간을 부여받으며, 이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에게 이의제기의 근거가 알려지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알려졌어야 했던 때부터 10일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5. 제3항에 언급된 당국 이외의 기구가 이의 신청을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공급자가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조달을 집행한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에 최초 결정을 상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16.15 조 적용범위의 수정 및 정정

1.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장에 따른 조달 적용범위를 수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그리고

나. 수정 전에 존재하는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적용범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정 제안을 통지에 포함한다.

2. 제1항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보상조정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가. 문제의 수정이 사소한 개정 또는 순전히 형식적인 성질의 정정인 경우, 또는

나. 수정제안이 당사국이 조달기관에 대한 자신의 통제 또는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조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3. 다른 쪽 당사국이,

가. 제1항나호에 따라 제안된 조정이 상호합의된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나. 제안된 수정이 제2항가호에 따른 사소한 개정 또는 정정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다. 제안된 수정이 제2항나호에 따라 당사국이 조달기관에 대한 자신의 통제 또는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조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통지의 접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23장(분쟁해결)의 목적을 포함하여 조정 또는 제안된 수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제안된 수정, 정정 또는 사소한 개정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국은 부속서 16가를 수정함으로써 그 합의에 효력을 부여한다.

제 16.16 조

추가 협상

이 협정 발효 이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합의된 자신의 정부조달 시장접근 적용범위에 대해 비당사국에게 추가적인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이 장에 따른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한다.

제 16.17 조

중소기업¹⁾의 참여

1.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입찰 절차에 공동 참여를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공급자 간, 특히 중소기업 간 사업 협력의 중요성 또한 인정한다.

1) 이 조 제16.18조 및 부속서 16나의 목적상, 페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란 페루 국내 법령에 정의된 미소기업을 포함한다.

3. 양 당사국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그리고 중소기업의 특수한 필요성에 집중하여 정부조달 절차, 방법 및 계약요건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 16.18 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 각자의 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과 더불어 각자의 정부조달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 규제 틀, 우수 관행 및 통계와 같은 경험 및 정보의 교환

나. 정부조달제도에 있어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의 개발 및 사용

다. 정부조달시장 접근에 대해 공급자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그리고

라. 공무원 연수를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강화

제 16.19 조 조달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조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을 평가하고 양 당사국에게 적절한 활동을 권고한다.

나. 협력과 관련된 활동을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그리고

다. 이 장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협상을 고려한다.

제 16.2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란 비정부적 목적을 위해 비정부구매자에게 상업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되고, 비정부구매자에 의해 관례적으로 구매되는 형태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참가조건이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한 모든 등록, 자격심사 또는 그 밖의 선행조건을 말한다.

전자 경매란 새로운 가격 또는 평가 기준과 관련된 계량화가 가능한 입찰의 비가격 요소에 대한 새로운 가액 중 어느 하나, 또는 양자 모두를 공급자가 제시하기 위해 전자적 수단의 이용을 수반하고, 그 결과로 입찰 순위 또는 순위 조정이 이루어지는 반복적 과정을 말한다.

서면으로란 독해 가능하고, 모사 가능하고, 그리고 사후에 통지 가능한 모든 문자 또는 숫자로 된 표현을 말한다. 이는 전자적으로 전송되고 저장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제한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선택한 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자들을 접촉하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조치란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말한다.

예정된 조달의 공고란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또는 양자 모두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공표하는 공고를 말한다.

대응구매란 국산 부품의 사용, 기술 면허, 투자, 대응 무역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또는 요건과 같이 국내 개발을 장려하거나 당사국의 국제수지계정을 개선하는 모든 조건 또는 약속을 말한다.

공개입찰이란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양 당사국은 공개입찰이 양국 각각의 법령에 따른 기본협정과 역경매와 같은 양식을 포함한다고 양해한다.

조달이란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의 사용을 획득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을 획득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는 정부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조달기관이란 부속서 16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한다.

선택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들에 한정하여 입찰서 제출을 요청하는 조달방법을 말한다.

서비스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건설서비스를 포함한다.

표준이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 방법에 대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규정한 것으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지 아니한 문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상품, 서비스, 공정 또는 생산 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다룰 수 있다.

공급자란 조달기관에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할 수 있는 인 또는 인의 집단을 말한다. 그리고

기술규격이란 다음의 입찰 요건을 말한다.

- 가.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용적을 포함한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공급을 위한 과정 및 방법을 기술한 것, 또는
- 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다루는 것

부속서 16가2)

정부조달

제 1 절

중앙정부기관

상품

기준가: 95,000 특별인출권

서비스

기준가: 95,000 특별인출권

건설서비스

기준가: 5,000,000 특별인출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동안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을 위한 기준가는 50,000 특별인출권이다.

페루 양허표

여기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장은 페루 양허표에 기재된 기관의 모든 부속 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1. 국립총장회
2. 페루중앙은행
3. 의회
4. 국립판사협의회

2) 페루 양허표에 기재된 조달기관의 영문 명칭은 공식적인 번역이 아니다. 이 명칭은 스페인어와 친숙하지 않은 독자의 편의를 위해서만 제공된다. 공식적인 목적상, 페루는 자국의 조달기관의 공식 명칭을 스페인어로 인용하고 공표한다.

5. 감사원
6. 호민관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 환경부
9. 농업부
10. 통상관광부
11. 국방부(주해1)
12. 경제재정부(주해2)
13. 교육부
14. 에너지광업부
15. 법무부
16. 여성사회발전부
17. 생산부
18. 외교부
19. 보건부
20. 노동고용개발부
21. 교통통신부
22. 주택건설위생부(주해3)
23. 내무부(주해1)
24. 검찰부
25. 중앙선거관리사무소
26. 사법부
27. 각료이사회
28. 국립 신분 및 혼인 등록처
29. 의료보험(주해4)
30. 은행보험연금감독원
31. 헌법재판소
32. 알티플라노 국립대학교
33. 페루 중앙대학교
34. 산마르코스 국립대학교

35. 라몰리나 국립농업대학교
36. 국립산림농업대학교
37. 아마존 마드레 데 디오스 국립대학교
38. 다니엘 알씨데스 카리온 국립대학
39. 카하마르카 국립대학교
40. 엔리케 구즈만 발레 국립대학교
41. 후앙카벨리카 국립대학교
42. 국립공학대학교
43. 페루 아마존 국립대학교
44. 피우라 국립대학교
45. 산 아구스틴 국립대학교
46. 트루히요 국립대학교
47. 톰베스 국립대학교
48. 우카얄리 국립대학교
49. 카야오 국립대학교
50. 델 산타 국립대학교
51. 페데리코 비아레알 국립대학교
52. 헤르밀리오 발디잔 국립대학교
53. 호르헤 바사드레 그로만 국립대학교
54. 호세 F. 산체스 카리온 국립대학교
55. 미카엘라 바스티다스 국립대학교
56. 쿠스코 산 안토니오 데 아바드 국립대학교
57. 산 크리스토팔 데 후아만가 국립대학교
58. 산 마르틴 국립대학교
59. 산 루이스 곤자가 국립대학교
60. 산티아고 안투네즈 데 메이올로 국립대학교
61. 토리비오 로드리게즈 데 멘도사 국립대학교
62. 페드로 루이즈 갈로 국립대학교

페루 양허표에 대한 주해

1. 국방부 및 내무부: 이 장은 의류(HS 제6205호) 및 신발(HS 제 64011000호)에 대한 페루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경찰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경제재정부: 이 장은 허가 부여 또는 증자, 합작투자, 서비스, 리스 및 관리 계약과 같은 그 밖의 수단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법적, 재정적, 경제적 또는 이와 유사한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민간 투자촉진청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주택건설위생부: 이 장은 토지권원 공식화 위원회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의료보험 : 이 장은 시트(HS 제6301호) 및 담요(HS 제6302호)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양허표

1. 감사원
2. 국무총리실
3. 여성가족부
4. 기획재정부
5. 금융위원회
6. 통일부
7. 행정안전부
8. 교육과학기술부
9. 법제처
10. 국가보훈처
11. 외교통상부
12. 법무부

13. 국방부(주해3)
14. 문화체육관광부
15. 문화재청
16. 농림수산식품부
17. 지식경제부
18. 보건복지부
19. 식품의약품안전청
20. 고용노동부
21. 국토해양부
22. 환경부
23. 조달청(주해4)
24. 국세청
25. 관세청
26. 통계청
27. 기상청
28. 경찰청(주해5)
29. 대검찰청
30. 병무청
31. 농촌진흥청
32. 산림청
33. 특허청
34. 중소기업청
35. 해양경찰청(주해5)
36. 소방방재청
37. 방위사업청(주해3)
38. 방송통신위원회
39. 공정거래위원회
40. 국가인권위원회
4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한민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1. 상기 중앙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보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이 부속서에 기재되지 않은 모든 기관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이 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 법의 대통령령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과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 및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의 조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조건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구매에 대해서, 이 장은 다음의 군급번호 분류품목에 대해서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제5절 및 제6절에 기재된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및 국방에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군급번호 2510	차량의 운전실, 몸체 및 프레임 구조 구성품
군급번호 2520	차량 동력전달 장치 구성품
군급번호 2540	차량용 가구 및 부수품
군급번호 2590	그 밖의 차량 구성품
군급번호 2610	항공기용이 아닌 공기식 타이어와 튜브
군급번호 291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연료계통 구성품
군급번호 292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전기계통 구성품
군급번호 293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냉각계통 구성품
군급번호 294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공기 및 기름 필터, 여과기 및 정화기
군급번호 2990	항공기용이 아닌 그 밖의 엔진 부수품
군급번호 3020	기어, 활차, 톱니바퀴 및 전달체인
군급번호 3416	선반

군급번호 3417	절삭기
군급번호 3510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장비
군급번호 4110	냉동장비
군급번호 4230	오염제거 및 주입장비
군급번호 4520	공간 난방장치 및 가정용 온수기
군급번호 4940	그 밖의 유지장비 및 수리점용 특수장비
군급번호 5120	날이 없고 전력으로 작동되지 않는 수공구
군급번호 5410	사전조립 및 이동식 건축물
군급번호 5530	합판 및 단판
군급번호 5660	울타리재료, 울타리 및 문
군급번호 5945	계전기 및 원통코일
군급번호 5965	헤드세트, 송수화기,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군급번호 5985	안테나, 도파관 및 관련 장비
군급번호 5995	전선, 코드 및 전선조립품: 통신장비
군급번호 6220	차량용 전기조명 및 설비
군급번호 6505	약품 및 생물제제
군급번호 6840	살충소독제
군급번호 6850	각종 특수화학물
군급번호 7310	식품조리, 제빵 및 급식장비
군급번호 7320	주방설비 및 기구
군급번호 7330	주방용품 및 용구
군급번호 7350	식탁용 식기
군급번호 7360	음식조리 및 급식용 세트, 키트, 장비 및 모듈
군급번호 7530	문방구 및 기록용지
군급번호 7920	비, 솔, 걸레 및 스폰지
군급번호 7930	청소 및 광택용 화합물 및 조제품
군급번호 8110	드럼 및 깡통
군급번호 9150	기름 및 윤활유 : 절삭용, 윤활용 및 유압용
군급번호 9310	종이와 판지

4. 조달청: 이 장은 이 절에 기재된 조달기관을 위해 조달청에 의해 수행되는 조달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2절 및 제3절에 기재된 기관을 위한 조달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기관에 대한 적용범위 및 기준가가 적용된다.

5.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이 장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이하 “정부조달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공질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조달은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 2 절 지방정부기관

상품

기준가: 200,000 특별인출권

서비스

기준가: 200,000 특별인출권

건설서비스

기준가: 15,000,000 특별인출권

페루 양허표

이 장은 이 양허표에 기재된 기관에 의한 조달에만 적용된다.

1. 아마조나스 지역정부
2. 앙카시 지역정부
3. 아레키페 지역정부
4. 아야쿠초 지역정부
5. 아푸리막 지역정부
6. 카하마르카 지역정부
7. 카야오 지역정부
8. 쿠스코 지역정부
9. 이카 지역정부
10. 후앙카벨리카 지역정부
11. 후아누고 지역정부
12. 후닌 지역정부
13. 라 리베르타드 지역정부
14. 람바예케 지역정부

15. 리마 지역정부
16. 로레토 지역정부
17. 마드레 데 디오스 지역정부
18. 모케과 지역정부
19. 파스코 지역정부
20. 피우라 지역정부
21. 푸노 지역정부
22. 산 마르틴 지역정부
23. 타크나 지역정부
24. 툼베스 지역정부
25. 우카얄리 지역정부

대한민국 양허표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경기도
8. 강원도
9. 충청북도
10. 충청남도
11. 경상북도
12. 경상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5.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1. 상기 지방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이 부속서에 기재되지 않은 모든 기관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이 절은 지방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 법의 대통령령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과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 절 그 밖의 대상기관

상품

기준가: 400,000 특별인출권

서비스

페루의 기준가: 400,000 특별인출권

1. 대한민국이 정부조달협정의 부록 I에 대한 부속서 3에 서비스 기준가를 포함하는 경우, 정부조달협정의 부록 I에 대한 부속서 3의 대한민국의 기준가 및 주해가 이 절의 대한민국 양허표에 기재된 조달기관에 의해 조달되는 서비스에 즉시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 5년이 지나도 대한민국이 정부조달협정의 부록 I에 대한 부속서 3에 서비스의 기준가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페루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할 때까지 서비스 조달에 대한 이 절의 적용을 정지한다.

건설서비스

기준가: 15,000,000 특별인출권

페루 양허표

1. 농업은행
2. 국립은행
3. 원자재은행
4. 부동산 및 동산 협상회사
5. 개발금융공사
6. 페루공항민간항공공사
7. 페루전력공사

8. 남부전력공사
9. 전력인프라 관리 공사
10. 마추픽추 수력발전공사
11. 국립코카공사
12. 페루국립항만공사
13. 페루출판공사
14. 동양지역전력서비스공사
15. 남동지역전력서비스공사
16. 밀레니아 부동산공사
17. 페루페트로
18. 페루석유공사(주해1)
19. 리마상하수도공사
20. 해상산업공사
21. 페루우편공사
22. 서남전력공사

페루 양허표에 대한 주해

페루석유공사: 이 장은 다음 상품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원유
- 나. 휘발유
- 다. 프로판
- 라. 디젤유
- 마. 부탄
- 바. 저황중증류 또는 경유
- 사. 천연가스
- 아. 바이오디젤
- 자. 비환식 포화 탄산수소
- 차. 촉매
- 카. 에탄올
- 타. 첨가제

대한민국 양허표

1. 한국산업은행
2. 기업은행
3. 한국조폐공사
4. 한국전력공사(HS 제8504호, 제8535호, 제8537호 및 제8544호 범주에 해당되는 상품의 구매는 제외)
5. 대한석탄공사
6. 대한광물자원공사
7. 한국석유공사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 한국도로공사
10. 대한주택공사
11. 한국수자원공사
12. 한국토지공사
13. 한국농촌공사
14. 농수산물유통공사
15. 한국관광공사
16. 근로복지공단
17. 한국가스공사
18. 한국철도공사

대한민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이 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과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4 절 상 품

제1절부터 제3절까지 및 제7절의 각 절의 주해를 조건으로, 이 장은 제1절부터 제3절까지에 기재된 기관에 의해 조달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제 5 절 서비스

페루 양허표

제1절부터 제3절까지 및 제7절의 주해를 조건으로, 페루 양허표에서 배제된 서비스를 제외하고, 이 장은 제1절부터 제3절까지에 기재된 기관에 의해 조달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 장은 중앙상품분류 1.1버전에서 상술된 바와 같이 다음의 서비스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중앙상품분류 1.1버전의 전체 목록에 대해서는 <http://unstats.un.org/unsd/cr/registry/regcst.asp?C1=3>을 참조할 것).

중앙상품분류 8221	회계 및 감사 서비스
중앙상품분류 8321	건축서비스
중앙상품분류 8334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서비스
중앙상품분류 8335	공사 및 설치 단계동안 엔지니어링 서비스
중앙상품분류 82191	중재 및 조정서비스

대한민국 양허표

이 장의 목적상, 그리고 제16.1조를 저해함이 없이, 제1절 및 제2절의 서비스의 경우, 금융서비스를 제외하고는 MTN.GNS/W/120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일반 목록의 어떠한 서비스도 배제되지 아니한다. 제3절의 서비스의 경우, 개정 정부조달협정에 기재된 서비스는 포함된다(그 밖의 서비스는 배제한다).

제 6 절 건설서비스

이 장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은 제1절부터 제3절까지에 기재된 조달기관에 의해 조달되는 중앙상품분류 51에 분류된 모든 건설서비스의 조달에 적용된다.

제 7 절

일반주해

여기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각 당사국 양허표의 다음 일반 주해는 이 부속서의 모든 절을 포함하여 이 장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페루 양허표

1. 이 장은 미소기업을 위한 조달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장은 식량 원조 프로그램을 위한 상품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은 페루의 한 조달기관에 의한 페루의 다른 한 조달기관으로부터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장은 알파카 및 야마 섬유로 만들어진 직물 및 의류 취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장은 대사관, 영사관 및 그 밖의 페루 외교사절에 의한 그들의 활동 및 관리만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양허표

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8 절

공표수단

페루에 대해서는,

정부조달에 관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된다.

법령 및 법제: www.osce.gob.pe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조달기회: www.seace.gob.pe

BOT 계약과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대한 조달 기회: www.proinversion.gob.pe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정부조달에 관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된다.

법령 및 법제: www.pps.go.kr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조달기회: www.g2b.go.kr

BOT 계약에 대한 조달 기회: www.pimac.org

부속서 16나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적용 범위

1. 이 부속서는 15,000,000 특별인출권을 넘는 가액의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적용된다.

2.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이 부속서는 부속서 16가의 제1절 및 제2절에 기재된 조달기관의 BOT 계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3. 페루에 대해서는, 이 부속서는 부속서 16가의 제1절 및 제2절에 기재된 조달기관의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4.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인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관한 모든 조치에 대해, 자신의 조달기관을 포함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자신의 조달기관을 포함한 그 당사국이 국내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5.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인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관한 모든 조치에 대해, 자신의 조달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은 외국인과의 제휴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를 근거로 국내에 설립된 어느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한다.

예정된 조달의 공고

6.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인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

약에 대한 예정된 조달의 공고가 부속서 16가 제8절에 기재된 전자적 매체에 공개되어, 관심 있는 공급자가 그 계약의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낙찰 공표

7.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인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의 각각의 낙찰 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낙찰이 부속서 16가 제8절에 기재된 전자적 매체에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이의 제기 절차

8. 각 당사국은 권한있는 당국에 의한 결정의 심의를 위한 효율적인 제도를 보장한다. 이 의무는 특별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심의 제도의 수립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 밖의 규칙 및 절차

9.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조건으로, 이 부속서는 양 당사국이 중소기업의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수행한 조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정의

10.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이란 물리적 기간시설·공장·건물·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된 기간 동안 부여하는 모든 계약적 약정을 말한다.

부속서 16다

기준가액

1. 각 당사국은 기준가가 유효하게 되는 해 전해의 10월 1일 또는 11월 1일부터 역산한 2년 동안의 국제통화기금이 월별 “국제금융통계”에 공표하는 특별인출권에 대한 각각의 통화의 일일 환산 비율 평균을 사용하여 기준가액을 자국 통화로 환산한다. 기준가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유효하다.

2. 양 당사국은 새로이 계산된 가액을 각각의 기준가가 유효하기 늦어도 1개월 전에 자국의 통화로 서로에게 통지한다. 양국 각각의 통화로 표시된 기준가는 역년으로 2년 동안 고정된다.

3.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정된 상품 및 서비스의 기준가액은, 필요한 경우, 일백만원 아래는 버린다. 이렇게 수정된 건설서비스의 기준가액은, 필요한 경우, 일천만원 아래는 버린다.